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2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판단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해야 하고, ②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즉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접수된 때가 제척기간 경과의 기준일이 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때가 제척기간 경과의 기준일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지목한 증여계약이 2016. 6. 25.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6. 24.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채무자 C 측에 송달된 날이 2021. 7. 2. 또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2021. 7. 2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해성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
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2016. 6. 25.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437,500원 및 이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소외 C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5번부터 8번까지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부동산목록

1. 경상남도 창원군
대 543㎡
2. 경상남도 창원군
대 161㎡
3. 경상남도 창원군
잡종지 395㎡
4. 경상남도 창원군
임야 16066㎡
5. 경상남도 창원군
도로 20㎡
6. 경상남도 창원군
도로 48㎡
7. 경상남도 창원군
전 364㎡
8. 경상남도 창원군
임야 1414㎡

